【 붙임 2 】

강북구 장학생 자격 및 종류

□ 관련근거

○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

□ 자 격

○ 강북구 관내에서 장학금 지급일 전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재학생(유공장학생은 거주지 제한 없음)

○ 당해 학년 동안 타 장학금 수혜사실이 없는 재학생

○ 최근 3년이내(2013년~2015년) 강북구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신청자가 미달할 경우 선발

※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 가정 등 법정학비지원대상자 및 수업료가 면제되는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

□ 종 류

종류별	복지장학생	·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
	우등장학생	·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 재학 중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상위 20%이내 해당자
	특기장학생	· 예·체능 및 기타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세계, 전국, 서울시대회 등에서 강북구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.
	유공장학생	·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 1년 이상 성실히 봉사하고 특히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의 자녀로서 학비지원이 필요한 사람 ※ 자원봉사자의 경우 1,0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어 자원봉사인증서를 받은 자원봉사자의 자녀 ※ 강북구 새마을 장학금 수혜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제외